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05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18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1. 9. 28.
판 결 선 고	2021. 11. 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 12. 8. 통지한 취득세 1,146,710원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05

가. 원고는 2007. 3. 14. [redacted]시 B 지상 주택 C호 및 [redacted]시 D 지상 주택 C호(이하 각 'B 주택', 'D 주택'이라 하고, 함께 지칭할 때 '이 사건 주택들'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7. 3.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7. 3. 14. B 주택에 대한 취득세 352,940원, D 주택에 대한 취득세 302,520원의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2007. 6. 15. 이 사건 처분을 받고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지속으로 위 취득세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해 오고 있다(을 3, 4호증). 위 안내문 중에는 2020. 12. 8. 자 납부 안내문(갑 제3호증) 또한 있다.

라. 원고는 2020. 1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주택들을 매입하였던 실거래자는 원고가 아닌 E이고 원고는 E의 부탁에 따라 E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실거래자가 아닌 원고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07. 6. 15.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제소기간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12. 28.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05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들에 대한 취득세가 납부고지된 사실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2020. 12. 8.자 납부안내문을 다투고 있으나, 해당 납부안내문은 2007. 6. 15. 원고에게 통지된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독촉 중 하나에 불과하여 따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등 참조) 2020. 12. 8.자 납부안내문을 처분으로 특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가사 원고의 청구를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여 볼지라도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임의로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는바, 이 경우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적용되므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가 2007. 6. 15.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2. 28.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05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05

별지

관계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끝.